제816호 대구광역시 서구 공보 2019년 9월 30일

더 많은 배려 함께하는 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공 보

제816호 2019. 9. 30.(월)

안내문

◇ 공보의 게재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오니, 절차 및 기한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는 매월 10일, 20일, 30일에 발행(10일 단위)되며 공보발행 방식이 전자식 형태로 전환되어 서구청 홈페이지(www.dgs.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서구청 홈페이지 접속 ⇒ 행정정보⇒ 서구소식⇒ '서구공보'에서 열람

◇ 공보발행 절차

【원고접수마감】 매월 8일, 18일, 28일(D-2)

【편집】 접수마감 익일(D-1)

【게시】 발행일(D일)

◇ 발행일이 공휴일인 경우"다음날"발행되며, 접수마감 이후 접수분에 대하여는 다음 호에 게재됨으로 특별히 게재되어야 할 원고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고는 반드시 전자문서로 송부하여 주시고, 각종 조례, 규칙, 고시, 공고 등의 업무는 공보 발행 일자를 참조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람									

발행 : 대구광역시 서구 편집 : 문화홍보과(TEL : 663-2161, FAX : 663-2169)

◀ 대구광역시 서구 ▶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768호 3

⊙ 대구광역시 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781호 10

⊙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782호 17

⊙ 대구광역시서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783호 29

⊙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786호 35

규 칙

⊙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대구광역시 서구 규칙 제854호 42

⊙ 대구광역시 서구 금권 등의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 대구광역시 서구 규칙 제855호 45

⊙ 대구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구광역시 서구 규칙 제856호 48

⊙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무 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구광역시 서구 규칙 제857호 50

⊙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대구광역시 서구 규칙 제858호 52

⊙ 대구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구광역시 서구 규칙 제859호 54

⊙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대구광역시 서구 규칙 제860호 57

고 시

⊙ 도로명 도로구간 변경 및 폐지 고시 대구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9-32호 93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768호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3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

1. 개정 이유

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의 시군구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구군간 입법통일성을 기하고 공공요금 미반환 규제를 정비하여 주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 인상(별표4)

나. 수수료 미반환 규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안 제23조제2항)

다. 상위법령 위임없는 옥외광고사업자 보수교육 불참 신고서 서식 삭제(별지13)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도시재생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팩스, 이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처

1)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 (평리동) 도시재생과

2) 전 화 : 053-663-2825 / 팩스 : 053-663-2819

3) 이메일 : csunet@korea.kr

나. 제출사항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필요한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수수료) ① (생략)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 3. (생략) ③ (생략)	제23조(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단서 삭제>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별표 4]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3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등의 종류	적용기준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연면적 6㎡ 이하	14,000원
	- 연면적 6㎡ 초과 20㎡ 이하	20,000원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800원
나. 돌출간판(광고물 윗부분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 이상인 경우)	- 연면적 3.5㎡ 이하	14,000원
	- 연면적 3.5㎡ 초과 10㎡ 이하	20,000원
	- 연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600원
다. 옥상간판	- 연면적 50㎡ 이하	21,000원
	- 연면적 50㎡ 초과 70㎡ 이하	38,000원
	- 연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3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지면으로 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경우)	- 연면적 10㎡ 이하	14,000원
	- 연면적 10㎡ 초과 20㎡ 이하	20,000원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800원
마. 애드벌룬(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다의 옥상간판에 준함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라의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가의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 연면적 30㎡ 이상 40㎡ 이하	11,000원
	- 연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600원
아. 그 밖의 안점점검 대상광고물	- 같은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개 정 안

[별표 4]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3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등의 종류	적용기준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 연면적 5㎡ 이하	18,000원
	- 연면적 5㎡ 초과 20㎡ 이하	26,000원
	- 연면적 2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1,000원
나. 돌출간판	- 연면적 3.5㎡ 이하	18,000원
	- 연면적 3.5㎡ 초과 10㎡ 이하	26,000원
	- 연면적 1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2,000원
다. 옥상간판	- 연면적 50㎡ 이하	27,000원
	- 연면적 50㎡ 초과 70㎡ 이하	49,000원
	- 연면적 7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1,6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0㎡ 이하	18,000원
	- 연면적 10㎡ 초과 20㎡ 이하	26,000원
	- 연면적 2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1,000원
마. 애드벌룬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다의 옥상간판에 준함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라의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	- 가의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 연면적 30㎡ 이상 40㎡ 이하	14,000원
	- 연면적 4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	800원
아. 그 밖의 안점점검 대상광고물	- 같은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관련 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1. 6.>

1.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2.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3.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제증명 발급 전 신청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경우. 다만, 소인된 증지수수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한다.(신설. 2019. 5. 30.)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781호

『대구광역시 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3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

대구광역시 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인권업무 추진 주체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됨에 따라 구민의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

나.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6조)

다. 인권교육 (안 제7조)

라.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안 제8조)

마.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등 (안 제9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총무과)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팩스, 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서구 총무과

-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화 : (053)663-2225 / 팩스 : (053)663-2219
- 이메일 : mong0626@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 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 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구민”이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구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협력) 구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구의 인권정책 시행 시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

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소관부서별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교육)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인권교육을 시행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
2.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 및 민간단체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9조(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복지생활국장, 도시안전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인권 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업무 담당이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2.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⑥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관련 공무원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782호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9월 3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청소년육성기금 존속기한 도래(‘19.12.31.)에 따른 존폐여부 검토결과 기금 조성(‘91년) 이후 복지제도 지원 확대 및 타 제도와 중복수혜 등으로 실효성이 낮고, 매년 수익금 감소로 기금운용 취지가 상실됨에 따라 존치 실익이 없는 동 조례 제4장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4장(청소년육성기금 관련) 삭제 (안 제19조 ~ 제29조의2)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평생교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그 사유 등)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화 : 053-663-2194
- 팩스 : 053-663-2149
- 이메일 : ryusj000@korea.kr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19조부터 제29조의2까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4 장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기금	<삭 제>
제19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다른 기관으로부터 전입금 4. 기타 수입금 ② 구청장은 회계년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삭 제>
제19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삭 제>
제20조(기금의 관리·운영) ① 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계좌로 관리하되,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당해연도 수익금 범위안에서 집행하되, 잉여금등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	<삭 제>
제2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삭 제>

1. 생활이 어려운 무직·미진학 청소년들의 진학, 직업훈련 또는 생활정착금등 지원 2. 생활이 어려운 산업체 근로 청소년에 대한 지원 3. 모범청소년에 대한 장학·지원사업 4. 청소년수련활동의 지원 5.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6. 청소년교류의 지원 7. 청소년육성등을 위한 사업에의 투자 및 융자 지원 8. 기타 청소년육성들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제22조(기금의 회계관리)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삭 제>
제2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소년육성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삭 제>

(이하 “기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금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1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복지생활국장이 되고 위원은 구의원 1인, 복지정책과장,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신설 2008.09.22, 개정 2014.11.1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기금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금위원회 담당 6급으로 한다.	
제24조(기금위원회의 기능) 기금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조성 관리 및 운용계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2. 기금지원대상자 및 지원대상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삭 제>
제24조의2(기금위원회의 회의)	<삭 제>

① 기금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기금위원회 위원은 심의·의결하는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기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 그 사유를 밝혀 기금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금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삭 제>
제25조(기금지원대상등) 기금의 지원대상자, 지원법위, 지원한도액, 지원대상자 추천 및 선발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26조(기금의 지급정지 및 회수) 기금을 지원 받았거나 기금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품행이 불량하거나 지원목적외 사용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을 아니할 수 있다.	<삭 제>
제27조(기금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지원대상자 및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삭 제>
제28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삭 제>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복지정책과장 2. 기금출납원 - 위원회담당6급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29조(결산 및 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삭 제>
제29조의2(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사업이 성과 및 기금자산의 운영성과 등 기금운용의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 보고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삭 제>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제15조(기금의 통합·폐지)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2017. 7. 26.>

1.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7. 7. 26.>

「청소년 기본법」

제56조(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①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청소년활동 지원 등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용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783호

『대구광역시서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9월 3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

대구광역시서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청소년육성기금 존속기한 도래(‘19.12.31.)에 따른 존폐여부 검토결과 기금 조성(‘91년) 이후 복지제도 지원 확대 및 타 제도와 중복수혜 등으로 실효성이 낮고, 매년 수익금 감소로 기금운용 취지가 상실됨에 따라 존치 실익이 없는 동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 폐지**

3. 폐지규칙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평생교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그 사유 등)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화 : 053-663-2194
- 팩스 : 053-663-2149
- 이메일 : ryusj000@korea.kr

의 견 제 출 서

규 칙 명	대구광역시서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규칙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대구광역시서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대구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대구광역시서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안

대구광역시서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제15조(기금의 통합·폐지)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2017. 7. 26.>

1.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7. 7. 26.>

「청소년 기본법」

제56조(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①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청소년활동 지원 등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용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786호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3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조항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보호 수단을 제고하고, 상위법에서 규정한 과태료 이의제기 기간 및 관할법원 이의제기 통보기간을 반영하여 주민의 방어권을 강화하며, 상위법과 모순되게 기재된 준용규정 오류를 정정함으로써 점용료징수의 공정성을 기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항 변경

-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제8호, 제9호에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생년월일 기재로 대체

○ 상위법과 모순된 이의제기 기간 및 이의제기 통보기간 변경 (안 제13조제1항, 제2항)

- 당초: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변경: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당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통보서에 의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변경: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구청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통보서에 의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상위법과 모순된 준용규정 변경(안 제11조, 제15조)

- 당초: 이 규칙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 변경: 이 규칙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10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건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처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건설안전과장)

우편 : 41777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전화 : 053-663-2876, 팩스 : 053-663-2879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사유)

다.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대구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이 규칙에서 과태료 부과 · 징수 등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3조제1항 중 “30일이내에”를 “60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체없이”를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과태료 부과 · 징수) ① ~ ⑤ (생 략)	제11조(과태료 부과 · 징수)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이 규칙에서 과태료 부과 · 징수 등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3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3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 60일 이내에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의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 ----------.
제15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삭 제>

【관련 법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21조(법원에의 통보)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9월 3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

대구광역시 서구 규칙 제854호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칙은 대구광역시서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구광역시서구청소년수련관”을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장애인(1,2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가목 중 “3~6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 을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재무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률 개정(2019. 7. 1.시행)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용하던 용어를 정비하고 용어 사용 오류 등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 제명 오류, 용어사용 오류 등 정비

- 제1조, 제2조, 제3조제1항, 제10조, 제14조제1항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변경

- 제5조제1항제2호 중 “장애인(1,2급)” 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으로 변경
- 제5조제1항제7호가목 중 “3~6급” 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으로 변경

대구광역시 서구 금권 등의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9월 3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

대구광역시 서구 규칙 제855호

대구광역시 서구 금권 등의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

대구광역시 서구 금권 등의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영수원부와 함께 금권등” ” 을 “ “영수원부와 함께 금권 등” ” 으로, “금권등의” 를 “금권 등의” 로 한다.

제2조 중 “금권등” 을 “금권 등” 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금권등” 을 “금권 등” 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금권등” 을 “금권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비치하여” 를 “갖추어 두고” 로, “폐기등” 을 “폐기 등” 으로, “기재” 를 “기록하여” 로 한다.

제6조 중 “금권등” 을 “금권 등” 으로, “첨부” 를 “첨부하여” 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금권등” 을 “금권 등” 으로, “비치하여” 를 “갖추어 두고” 로, “유지 정비” 를 “유지 및 정비”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불함” 을 “지급함” 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중 “금권등”을 각각 “금권 등”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금권등”을 “금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권등중”을 “금권 등 중”으로, “금권등의”를 “금권 등의”로 한다.

제10조 중 “기장”을 “적고”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금권등”을 “금권 등”으로 한다.

제12조 본문 중 “변경 금권”을 “변경 및 금권”으로, “변경등”을 “변경 등의”으로, “금권등을”을 “금권 등을”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금권등 가운데서 1책중”을 “금권 등 가운데서 1책 중”으로, “회수 보관하되”를 “회수하여 보관하되”로, “서명 날인”을 “서명날인”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용어순화 및 용어 띄어쓰기 정비로 구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함임.

2. 주요 개정 내용

○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용어순화 및 용어 띄어쓰기 정비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한 용어순화
  (안 제5조제2항, 제6조, 제7조제1항, 제10조, 제12조)
- 띄어쓰기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 제12조)

대구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9월 3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

대구광역시 서구 규칙 제856호

대구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구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빌어”를 “빌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을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단서 중 “새로이”를 “새로”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를 “심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지방회계법」 제정(법률 제14197호, 2016.5.29. 제정, 2016.11.30. 시행)으로 금고지정 절차에 관한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 사항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순화대상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 지방회계법 제정에 따른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사항 반영(안 제1조, 제2조제2호)

-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로 변경
- 제2조제1호 중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을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으로 변경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한 용어 순화(안 제1조, 제2조제1호,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무 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9월 3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

대구광역시 서구 규칙 제857호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무 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무 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2019. 4. 1부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됨.

2. 주요 개정 내용

○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무 조사 운영 규칙 제14조제1항제3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9월 3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인

대구광역시 서구 규칙 제858호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의 어린이집 개요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개인정보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 개인정보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 반영 서식 정비

- “주민등록번호” 를 “생년월일” 로 변경(별지 제1호서식)

대구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9월 3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

대구광역시 서구 규칙 제859호

대구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구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규칙이”를 “규칙에서”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전단 중 “시설물내”를 “시설물 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매장내”를 “매장 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정기준 :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지정된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선 요구에 따라 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 국민건강증진법과 다르게 정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의 제한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안 제3조제3항)

- 제3조제3항제2호를 삭제하고, 삭제된 “설치의 제한”에 대한 내용을 제3조제3항제1호에 포함하되, 국민건강증진법에 맞게 수정함.

○ 기타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자구수정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9월 3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

대구광역시 서구 규칙 제860호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제목 “총 칙” 을 “총칙” 으로 한다.

제1조 중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를 “조례” 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중 “재산관리지정” 을 “재산관리관 지정” 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체없이” 를 “지체 없이” 로 한다.

제11조 중 “조례” 를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로 한다.

제12조 앞에 “제2장 취득 및 처분 등” 을 삽입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제2항” 을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5. 기부할 물건의 도면

제12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중 “가격평정조사”를 “가격평정조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정평가 법인”을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제20조 중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하야야”를 “하여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의하여 지체없이”를 “따라 지체 없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24조 앞에 “제3절 대장 및 도면”을 “제3장 대장 및 도면”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각호”를 “각 호”로,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를 “증명 서류를 부속시켜 갖춰 두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5호서식]”을 “조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체없이”를 각각 “지체 없이”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증빙서류”를 “증명 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81조”를 “법 제46조”로 한다.

제27조 중 “비치하고”를 “갖춰 두고”로 한다.

제29조 중 “제30조”를 “제37조”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8조”를 “제1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공유재산매매계획서”를 “공유재산매매계약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교환계획서”를 “교환계약서”로 한다.

제30조의2제5호 중 “부동산개발신탁”을 “부동산개발신탁계약서”로 한다.

제32조 중 “비치하고”를 “갖춰 두고”로 한다.

제33조 중 “제30조제3”을 “제30조제3항”으로 한다.

제33조의2 중 “제62”를 “제62조제1항”으로 한다.

제34조 앞에 “제4절 청사 및 관사 관리”를 “제4장 청사 및 관사 관

리”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청사신축계획서는”을 “청사신축 시”로, “의한다”를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입주신고서”를 “관사입주신고서”로 한다.

제36조 앞에 “제5절 보 칙”을 “제5장 보칙”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제5호 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2부터 별지 제13호서식-8까지 삭제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1,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0호서식】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 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본 구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로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와 관련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 분의 사용료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과 관련하여 본 구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금 원정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본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에서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진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과 관련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사용허가 재산과 관련하여 차후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으며 본 구의 승인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제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그 밖에 본구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 한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 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본 구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 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월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 구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 구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본 구가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의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본 구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본 구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 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구의 결정에 의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공 유 재 산 대 부 계 약 서

재산의 표시 :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을 “갑” 이라 하고, 대부받는 자를 “을” 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부재산의 사용목적

제2조 대부기간 년 월 일 부 터 년 월 일 까지 (일간)

제3조 대부료는 연액 원정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 대부료의 납기는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5조 규정에 의하고 을이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수익에 필요한 모든 부담을 지며, 동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 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6조 을은 본 계약 기간 중 손해보험회사에 갑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이상에 해당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을은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을은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 ①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 대하여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을이 한국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4. 을이 체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5. 을이 갑으로부터 공유재산의 매수요구를 받고도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을이 위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때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갑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9조 제8조 제2항 단서의 배상액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이상을 기준으로 갑이 결정하고 을은 배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배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 ① 이 계약기간 중 을이 해제·해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1월 전에 해약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해제·해지하는 경우에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제·해지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갑이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대부기간 만료 후 을이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1월 전에 대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대부기간 만료후에 을이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 을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이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 을이 본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제16조 을은 대부재산에 대하여 연고권 및 시효이익을 주장하지 아니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 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대부하는 자 (갑) 대구광역시서구청장 ㊞

대부받는 자 (을) ㊞

주 : 이 서식의 조항 외에 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별지 제13호 서식】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서

년 도 관 리 계 획 총 괄 표(13-1)

계 획 명 : (단위 : ㎡, 천원)

구 분			상반기			하반기			합계			비 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계 토지 건물 기타										

년 도 취 득 대 상 재 산 목 록(13-2)

회 계 명 : (단위 :㎡, 천원)

일련번호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소유자 주소 · 성명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 (1) 매입과 기타취득을 계상하며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재하고 재산소재지,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 · 성명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4)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13-4”를 참조

년 도 교 환 대 상 재 산 목 록(13-3)

회 계 명: (단위 :㎡, 천원)

일련번호		재산표시 구분	재산표시 지목	재산표시 소재지	재산표시 일단의 수량	교환대상 수량	추정가액	교환시기	교환사유	교환대상자	비고
○ 건		처분									
		취득									
계	토지	처분									
		취득									
	건물	처분									
		취득									
	기타	처분									
		취득									

(주) (1) 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 대상 수량 :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토지가 2,000㎡이면 “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 수량”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3)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13-4”를 참조

년 도 매 각 대 상 재 산 목 록(13-4)

회 계 명 : (단위 :㎡, 천원)

일련번호	재산 표시			매각대상수량	과표또는 평가액	매각시기	매각사유	매수희망자 주소 · 성명	비 고
	지목	소 재 지	일단의 수량						
계	토지 건물 기타								

㈜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 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의 ○○필로 기재하고 지목 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 일단의 수량 : 일단의 토지 (1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

(3) 매각대상수량 :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4) 과 표 또는 평가액 : (3)란은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 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5) 매각시기 : 매각예정시기를 분기별로 기재한다.

(6) 매각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년 도 양 여 대 상 재 산 목 록(13-5)

회 계 명 : (단위 :㎡, 천원)

일련번호	재산표시			양여대상수량	과표또는평가액	양여시기	양여사유 및 근거법령	영수자	비고
	지목	소재지	일단의 수량						
계	토지 건물 기타								

(주) (1) 양여대상수량 : “양식 13-3”의 (주)(2)를 참조하여 착오 없도록 한다.
(2) 양여사유 :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

(유 상) 대 부 및 사 용 허 가 대 상 목 록(13-6)

회 계 명 : (단위 :㎡, 천원)

일련번호	재산표시				재산가액	허가기간	대부 및 사용		요율	추정대부(사용)료	대부 및(사용 허가) 방법	비고
	종별	소재지	지목 구조	수량			허가	용도				
계	토지 건물 기타											

(무 상) 대 부 및 사 용 허 가 대 상 목 록(13-7)

회 계 명 : (단위 :㎡, 천원)

일련번호	재산의 표시				재산가액	허가기간	무상대부(사용허가) 근거	비 고
	종 별	소 재 지	지목 · 구조	수 량				

구 유 재 산 매 수 신 청 서(13-8)

구 유 재 산 매 수 신 청 서

신청인	성 명		등 록 번 호	
	주 소		전 화 번 호	

신청내용

재산의 표시			신청면적 (㎡)	매수목적 (용도)	점유자 또는 대부사용자
소 재 지	지 목	면적(㎡)			

위 구유재산의 매수를 신청합니다.

※ 매수신청을 철회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감정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구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14호서식】

공 유 재 산 매 매 계 약 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매도자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이하 “갑” 이라 한다)과 매수자 (이하 “을” 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표시재산을 을에게 매매대금 원정에 매각한다.

제2조 을은 제1조의 매매대금중 계약체결일에 일금 원정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년 월 일까지 납부한다. 을이 매매대금 완납전에 표시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산이 건물 ·공작물 기타 시설물인 때에는 갑이 지정하는 손해보험회사에 갑을 보험금수령인으로 하여 매매대금상당액이상에 해당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 을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 할 수 있다.

제4조 갑은 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매도하는 재산에 대하여 을이 소유권이전등기등 각종 공부상 권리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5조 을은 재산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재산의 전매·양도
2. 본 계약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권의 설정
3. 본 계약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제6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을이 매매대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을이 제5조에 위반한 때
3. 을이 본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허위진술이나 허위증빙서류의 제출 기타 부정한 사실이 있음이 발견된 때
4. 제2조에 의한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②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제3호의 해제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③ 갑의 귀책사유로 계약재산의 명도 및 소유권 이전이 상당기간 지연됨으로써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① 갑이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을이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② 제1항의 경우 을은 즉시 그 재산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③ 을이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회복의 책임을 이행한 경우 갑은 을로부터 수납한 매매대금 중 계약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되, 재산을 을이 사용했을 때는 사용기간의 사용료 상당액, 공과금 및 원상복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④ 을이 제6조제3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갑은 을에게 을이 납부한 매매대금에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며 계약보증금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을에게 지급한다.

제8조 본 계약사항의 해석에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합의하여 갑이 결정한다.

제9조 매매대금 완납전에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에는 갑이 저당권설정 등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을은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제10조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법원으로 한다.

제11조 을은 본 계약 체결일 이후에 본 재산에 부과된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며 갑이 본 재산을 을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하는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 당사자는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 매도자(갑)

대구광역시서구청장 ㊞

위 매수자(을)

주 소 성 명 ㊞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별지 제16호서식】

공 유 재 산 매 수 요 구 서

주 소

성 명 귀하 서 구 청 장 ㊞

재 산 의 표 시 와 평 가 액

재 산 소 재 지	지 번	재산종별	총 수 량	대부수량	평가액	비 고

귀하가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9조제5항 및 제38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내에 구청장이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2. 2월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본 재산은 구청장의 허가없이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9조 규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별지 제19호서식】

대 부 (사 용 허 가) 신 청 서

○ 재산의 표시

・소 재 지

・지 목 (구 조)

・면 적 (건 물 면 적)

○ 대 부 (사 용) 기 간

○ 대 부 (사 용) 목 적

○ 대 부 (사 용) 료 : 귀 구가 정하는 바에 의함.

○ 대 부 (사 용) 조 건 : 귀 구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21호서식】

토 석 가 격 평 정 조 서

소재지	지번	토석종류	석재종류	용도	규격	수량(A)	매매실례또는 평가가격(㎥당)			평정가격		비고
							매매실례	감정평가업자		㎥당 단가 (D)	금액 (A×D)	
								(B)	(C)			
						㎡	원	원	원	원	원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 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

※ 토석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용 도 : 수출용, 특수용(비석, 상석, 분묘 장식용 등)

【별지 제24호서식】

관 사 사 용 허 가 신 청 서

1. 사용 신청인(직위) 성 명

2. 사용 신청 관사의 표시

관사번호	관리번호	소재지	면적		비고
			대지	건물	

3. 사용 신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 사용 신청을 허가함.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

【별지 제27호서식】

부 동 산 관 리 신 탁 계 약 서

별지목록1 기재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갑” 으로 하고, 수탁자를 “을” 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 ① 을은 위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은 물론, 개량 및 임대 등의 부동산사업을 행하여 그 수익을 갑에게 교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특약사항“ 에서 정하기로 한다.

제2조(신탁기간)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 만료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 )년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신탁공시) 을은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제4조(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을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을 관리·운용한다.

1. 신탁 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기타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료 기타 조건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을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이 선정하는 자에게 임대한다. 이 경우 을은 임차인의 선정 방법·임대료 및 기타 임대조건 등 선정결과에 대하여 갑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을은 제1호 내지 제2호에 의한 신탁부동산 관리·운용에 있어서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부근의 유사건물의 임대료, 임대조건 등을 참작하여 적정한 임대료 및 임대조건 설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4. 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시기 및 범위에 한해 수선·보존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에 있어서는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5. 을은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 또는 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갑과 협의하여 을이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내용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을 또는 을의 위탁을 받은 관리사무 수탁자는 관리사무 수행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신탁부동산 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통지를하여야 한다.

7. 을은 신탁건물에 대하여 을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신탁재산에서 납부한다.

제5조 (선관주의 의무) 을은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취급) 갑은 자신이 사용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 · 을 간 협의에서 특별히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신탁의 원본)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제2호의 반환 채무
5.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8조 (신탁의 수익)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기타 이에 준하는 것

제9조(수익권) ① 갑은 신탁의 원본·수익 기타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향수하는 권리를 갖는다.

② 을은 제1항의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한다.

③ 갑은 신탁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 갑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의 수익권을 양도 할 수 있다.

제10조 (신탁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신탁재산을 공공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신탁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1조에서 정한 목적 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을이 이 계약 조항에 위반한 경우

제11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을은 2개월 이내에 신탁의 최종계산서와 신탁의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갑이 승계한다.

③ 을은 제1항의 승인을 얻은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전 하여야 한다.

1.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현상태 대로 갑에게 인도한다.
2. 신탁 종료시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3. 신탁부동산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가하여 교부한다.

제12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유지관리비·개량비용 등과 기타 신탁사무처리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관한 제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을이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

에서 과실없이 받은 손해도 이와 같다.

제13조(신탁보수) 을은 신탁계약체결일로부터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기간중의 신탁보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8조제5항에 따라 갑과 을이 정하는 별도의 약정에 의해 정한 금액을 매년도 계산기일에 신탁재산에서 취득한다.

제14조(수선비등 적립) ① 을은 신탁부동산의 대규모 수선·보존 및 개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으로부터 수선 등의 비용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의 수선 등 비용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을은 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 제비용 및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자금의 차입) ① 을은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차입에 있어서 한도액은 일금 원정으로 한다. 다만, 을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 을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을은 제1항 규정에 따른 차입을 행하는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저당권설정시기 등에 대하여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금전의 운용) ① 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신탁업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이 경우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과 합동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 을은 신탁부동산의 임대료·수취한 보증금 등을 신탁사무 처리비용의 지불 및 차입금 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8조(신탁사무의 계산) ①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제8조의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2. 제12조의 비용부담과 제13조의 신탁보수를 지출로 한다.
3. 기간 중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신탁기간 중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신탁보수를 취득하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손해배상) ① 갑은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이 제10조제1호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을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탁부동산을 관리한 경우에는 신탁 기간 중 또는 신탁 종료 후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발생된 하자 및 그 하자가 있음을 원인으로 갑 또는 제3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협의) 이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21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겸 수익자 (갑)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수 탁 자 (을)
주 소 :
성명(법인명) : ㊞
등 록 번 호 :

※별지목록1 : 신탁재산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별지 제28호서식】

부 동 산 처 분 신 탁 계 약 서

별지목록1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갑”으로 하고, 수탁자를 “을” 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 을은 신탁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보존·관리하고 이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탁기간)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 만료(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 )년 이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 을이 제1항의 기간중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소유권이전 등기가 종료된 때에는 그 시기를 종료 시기로 한다.

제3조(일부종료)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종료한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신탁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처분가격·조건) ① 신탁부동산의 처분가격은 금 원정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은 처분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협의하여 처분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있어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승계, 대금지불방법 및 그 시기, 기타 처분에 관한 조건은 처분시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신탁공시) 을은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제6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 ① 을은 신탁기간동안 신탁부동산의 등기부 상 소유명의만을 보존하고, 처분행위 일체를 수행하되 사용수익 및 유지관리 사무는 갑이 하기로 한다. 다만, 유지관리·운용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으로 규정한다.

② 을은 이 계약 체결후 바로 신탁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처분활동을 할 수 있으며, 부동산 처분활동을 행함에 있어 갑의 정당한 이익을 도모하고, 신탁부동산이 조속히 처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선관주의 의무) 을은 신탁부동산과 관련한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취급) 갑은 자신이 사용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별히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신탁의 원본)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10조(신탁의 수익)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기타 이에 준하는 것

제11조(수익권) ① 갑은 신탁의 원본·수익, 기타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향수하는 권리를 갖는다.
② 을은 제1항의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③ 갑은 신탁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취득한다.
④ 갑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의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2조(신탁계약의 해지) ① 갑·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신탁재산을 공공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신탁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처분이 불가능함이 명백한 경우
3. 갑 또는 을이 이 계약 조항에 위반한 경우

② 갑의 처분의사의 포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을에게 중도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을은 해지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액과 신탁사무 처리에 소요된 제비용 및 갑과 을이 해지수수료를 별도로 정한 경우의 해지수수료를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목적의 달성 또는 중도에 신탁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을은 2개월이내에 신탁의 최종계산서와 신탁의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신탁계약이 종료 혹은 중도 해제된 경우 을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전하여야 하며,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갑이 승계한다.
1.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현상태대로 갑에게 인도한다.
2. 신탁기간 만료시 신탁사무 처리에 소요된 비용은 갑과 을간의 협의하에 별도 청구한다.
3. 신탁부동산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가하여 교부한다.

③ 신탁재산의 일부 처분으로 인한 일부종료의 경우에는 일부종료된 부분에 대한 수지계산서 작성 후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의해 신탁수익을 갑에게 교부한다.

제14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재산에 관한 제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을이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실없이 받은 손해도 이와 같다.

제15조(신탁보수) 신탁보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규정에 따

라 별지목록2의 약정사항대로 하며, 신탁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 또는 보상금등을 수령한 때 지급하되, 제13조제3항의 일부종료의 경우에는 일부 종료된 부분의 대금이 수령된 때에 지급한다.

제16조(신탁재산 환가에 의한 제비용의 충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차입금 및 그 이자, 신탁사무 처리상 을의 과실없이 발생한 손해, 기타 신탁 사무 처리를 위한 제비용 및 을의 대지급금을 충당하되,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7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을은 처분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 제비용 및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자금의 차입) ① 을은 신탁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차입에 있어서 한도액은 차입시 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을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을은 제1항 규정에 따른 차입을 행하는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저당권설정·시기 등에 대하여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금전의 운용) ① 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신탁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이 경우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과 합동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 을은 신탁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취득한 보증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등을 신탁사무의 제처리비용·차입금 등의 지출·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20조(신탁사무의 계산) ①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제10조의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2. 제14조의 비용부담과 제15조의 신탁보수를 지출로 한다.
3. 기간 중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신탁기간중 신탁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신탁보수를 취득하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대리인 선임) ① 갑은 을의 동의를 받아 이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귀속되는 일체의 권리 · 의무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여 위임할 수 있다.

② 을이 제1항의 대리인에게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 기타 신탁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이를 갑에게 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손해배상) ① 갑은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이 제12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을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탁부동산을 관리한 경우에는 신탁기간중 또는 신탁종료 후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발생된 하자 및 그 하자가 있음을 원인으로 갑 또는 제3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3조(협의) 이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24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겸 수익자(갑)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수 탁 자 (을)

주 소 : ㊞

성명(법인명) :

등 록 번 호 :

별지목록1 : 신탁재산

별지목록2 : 처분조건 및 신탁보수 등에 관한 약정사항

주) 이 서식의 각조항 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별지 제31호서식】

(앞면)

변 상 금 사 전 통 지 서

대 상 자	① 성 명		② 등 록 번 호	
	③ 주 소		④ 전 화 번 호	

⑤ 부 과 내 용

재 산 의 표 시			점 유 면 적 (㎡)	부 과 기 간	변 상 금 (원) [예 상]	비 고
소 재 지	지 목	지 적(㎡)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 · 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 ·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 ·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 · 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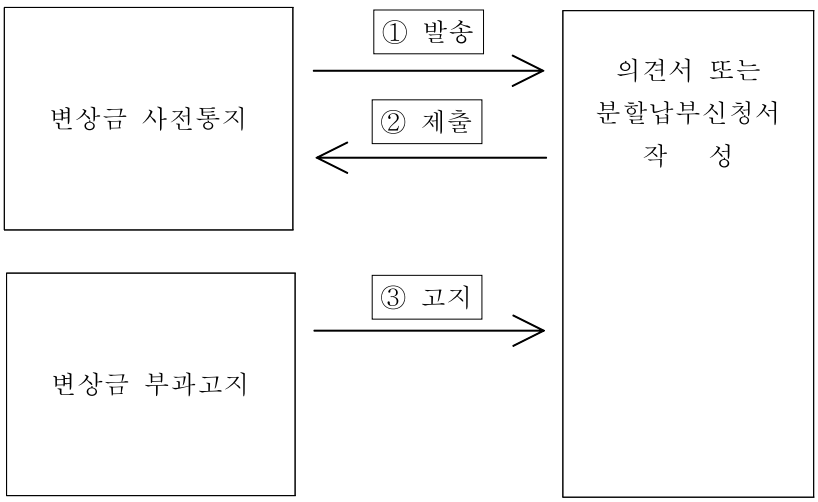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인)

귀하

(뒷면)

※ 변상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상당액에 그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

처 리 기 관	점 유 · 사 용 자
재 산 관 리 청 (위임 · 위탁을 받은 자 포함)	



【별지 제32호서식】

변상금사전통지에대한의견서

변상금 사전통지서의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의견이 있어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62조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항 목	통 지 내 용	의 견

<기 타 의 견>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3호서식】

변상금분할납부신청서

변상금사전통지서에 기재된 변상금 부과 예정액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1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6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할 납부를 신청합니다.

재산의 표시			변상금(예정)	분할납부기간
소재지	지목	면적(㎡)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현행규정의 일부 용어와 미비한 사항을 삭제 및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현행규정의 일부 용어와 미비한 사항을 삭제 및 정비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안 제12조제1항, 안 제18조제2항)
- 상위 법령 조례 위임 사항 정비(안 제24조제2항, 안26조제3항, 안 제29조, 안 제30조, 안 제33조, 안 제33조의2)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대구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9-32호

도로명 도로구간 변경 및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도로명 도로구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3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

1. 고 시 일 : 2019. 9. 30.
2. 고시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
3. 고시내용 : 도로명 도로구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붙임조서 참조)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053-663-30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도로구간 변경(폐지)조서 및 현황도 1부.

도로명 및 도로구간 폐지조서

구분	도로위계	도로명	행정구역	도로구간							폐지사유	비고
				시점	종점	길이(m)	폭(m)	간격(m)	기초번호 시작	기초번호 끝		
폐지	길	국채보상로2길	상중이동	중리동 1017	중리동 1021	449	20	20	1	44	신규도로(장산로) 개설에 따라 기존 도로명 및 도로구간 폐지	중심선 모두참조

도로명 및 도로구간 폐지 현황도



● 주도로구간(도로명)폐지 : 국채보상로2길

도로구간 변경조서

구분	도로위계	도로명	행정구역	도로구간							도로구간 변경사유	비고
				시점	종점	길이(m)	폭(m)	간격(m)	기초번호 시작	기초번호 끝		
변경전	길	와룡로87길	상중이동	이현동 42-434	이현동 45-291	1296	15	20	1	128	신규도로(장산로) 개설에 따라 기존 도로구간 일부 변경	중심선 도면참조
변경후					이현동 45-64	535	15	20	1	54		

도로구간 변경(종점) 현황도



● 변경 전 도로구간

● 변경 후 도로구간